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
----------	-----

발의년월일 : '93. 6. 14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 제안경위

1. 1993. 5. 3 제8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 논의
2. 1993. 6. 14 제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오운균 의원의 동의와 김경희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 성립

□ 제안이유

1. 상임위원회별 업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2. 도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으로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

□ 주요골자

1. 운영위원회를 위원회중 선임위원회로 조정
2.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과 산업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
3. 지방경찰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4.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 변경 (문교사회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
5. 기획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라 소관 부서 조정으로 명칭변경 (산업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
6.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른 위원회 업무 분장

□ 예산사항

1. 기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증감 없음

충청북도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2. 기획경제위원회 8명
3. 내 무 위 원 회 7명
4. 교육사회위원회 7명
5. 농림수산위원회 8명
6. 건 설 위 원 회 7명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 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지방경찰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다. 기획공보 및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3. 내무위원회
 - 가.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중평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사회위원회

- 가. 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교육사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위원회

- 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에 속하는 사항
- 나. 농어촌개발 및 농림에 관한 사항

6. 건설위원회

- 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에 속하는 사항
- 나. 건설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 (제7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명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무 위 원 회 10명 2. 문교사회위원회 9명 3. 산 업 위 원 회 9명 4. 건 설 위 원 회 9명 5. 의회운영위원회 9명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 2. 문교사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교사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산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물국, 지역경제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농림상공및 교통관광에 관한사항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10명 2. 기획경제위원회 8명 3. 내 무 위 원 회. 7명 4. 교육사회위원회 7명 5. 농림수산물위원회 8명 6. 건 설 위 원 회 7명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경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지방경찰청 예산 지원에 관한사항 다. 기획 공보및 지역경제에 관한사항 3. 내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내무행정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4. 건설위원회</p> <p>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건설 개발에 관한 사항</p> <p>5. 의회운영위원회</p> <p>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p> <p>나. 의회사무처에 속하는 사항</p> <p>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p> <p>제7조 (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p> <p>(신 설)</p>	<p>4. 교육사회위원회</p> <p>가. 교육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교육사회 및 보건에 관한 사항</p> <p>5. 농림수산위원회</p> <p>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에 속하는 사항</p> <p>나. 농어촌개발 및 농림에 관한 사항</p> <p>6. 건설위원회</p> <p>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나. 건설도시개발에 관한 사항</p> <p>제7조 (특별위원회) ①~③(현행과 같음)</p> <p>④.....</p> <p>.....</p> <p>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u>도의회</u>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p>